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4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08. 27.
3. 회부연월일 : 2025. 08. 28.

II.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공무원 의제 규정

개정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법 제6조제3항1)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시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2)에 따라 행정기관의 의사결

-
- 1)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과정에 자문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자문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정책자문위원회와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를 비교해 볼 때,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고, 자문절차가 필요적 절차가 아니며, 설치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절차인 심의기관인 위원회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음.³⁾

또한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설치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둘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짐.

따라서 개정안의 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 심의·의결기관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마찬가지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정한다.

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특성,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까지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39